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

---

1.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절차를 안내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 및 비회원께 동 처리절차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 >

- ①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고 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 보고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 ② (지자체)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협업시스템 (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
- ③ (취급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 신청
- ④ (지자체)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입회 폐기 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및 민원인에게 회신
- ⑤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식품의약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울산광역시장(식품의약품안전과장),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수의사회장 귀하, 한국병원약사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주무관 **손희빈** 사무관 **한원선** 마약관리과장 **김정연** 전결 2021. 8. 18.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3735 (2021. 8. 1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88 팩스번호 043-719-2890 / heebin218@korea.kr / 비공개(5)